

남 동 구
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제1655호
2022년 1월 3일
월요일

선 람	기 관 의 장

공 고

- 공 고 제 1 호 남촌동 채움어울림플랫폼 조성공사 수용제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 도시재생과 2
- 공 고 제 2 호 남촌동 채움어울림플랫폼 조성공사 수용제결신청 공시송 달 공고 도시재생과 3

회 람								
--------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남동구

편집 : 대변인실

공 고

남동구 공고 제2022-1호

**남촌동 채움어울림플랫폼 조성공사 수용재결
신청서류 열람 공고**

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1-116호(2021.7.1.)로 사업시행 인가된 남촌동 채움어울림플랫폼 조성공사 내 편입되어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 서류를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,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1월 3일

남 동 구 청 장

1. 사 업 명: 남촌동 채움어울림플랫폼 조성공사
2. 사 업 위 치: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340 일원
3. 사업 시행자: 남동구청장
4. 서류의 종류 및 명칭: 별첨 「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」 참조
5.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: 2022. 1. 3. ~ 2022. 1. 17. (14일 이상)
6. 열람장소 및 방법: 남동구청 도시재생과 방문 또는 전화(☎453-2807)
7. 열람서류: 별첨 「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」 참조
8. 기 타: 관계서류는 남동구청 도시재생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공 고

남동구 공고 제2022-2호

**남촌동 채움어울림플랫폼 조성공사
수용재결신청 공시송달 공고**

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1-116호(2021.7.1.)로 사업시행 인가된 남촌동 채움어울림플랫폼 조성공사 내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서류에 대하여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열람공고 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·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,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1월 3일

남 동 구 청 장

1. 사 업 명 : 남촌동 채움어울림플랫폼 조성공사
2. 사 업 위 치 :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340번지 일원
3. 사업 시행자 : 남동구청장
4. 공고 및 열람기간 : 2022. 1. 3. ~ 2022. 1. 17.
5. 열람 및 의견제출장소 : 남동구청 도시재생과(032-453-2807)
6.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는 그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.

7. 공시송달 내역

구분	소재지	지번	지목/ 물건종류	면적/규격	소 유 자		비고
					이름	주소	
1	남촌동	340	전	274m ²	미등기		권강녀 (토지대장상 소유자)
2	남촌동	340	비닐 하우스	76.85m ²	미상		